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學術院 137-044 서울市 瑞草區 盤浦大路 37길 59
電話：3400-5250, FAX：535-8836 <http://www.nas.go.kr>

大韓民國學術院



C O N T E N T S

I . 概況	1. 設立目的	4
	2. 機能	4
	3. 主要沿革	4
II . 組織	1. 機構表	5
	2. 機能	6
	3. 會員 選出 및 禮遇	7
	4. 學術院事務局	7
III . 主要活動	1. 大韓民國學術院賞	8
	2. 國際學術大會	8
	3. 韓·日 學術포럼	8
	4. 學術세미나 및 政策討論會	9
	5. 學術研究	9
	6. 學術交流	9
	7. 學術資料 發刊	10
	8. 基礎學問育成 優秀學術圖書 選定·補給	10
	9. 學術院研究財團	10
IV . 會員現況	1. 任員	11
	2. 會員	12
	3. 名譽會員	17
	4. 會長團	18
	5. 歷代會長	18
V . 大韓民國學術院法		19

I. 概況

1. 設立目的

學術院은 學術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科學者를 優待·支援하고 學術研究와 그 支援 事業을 行함으로써 學術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2.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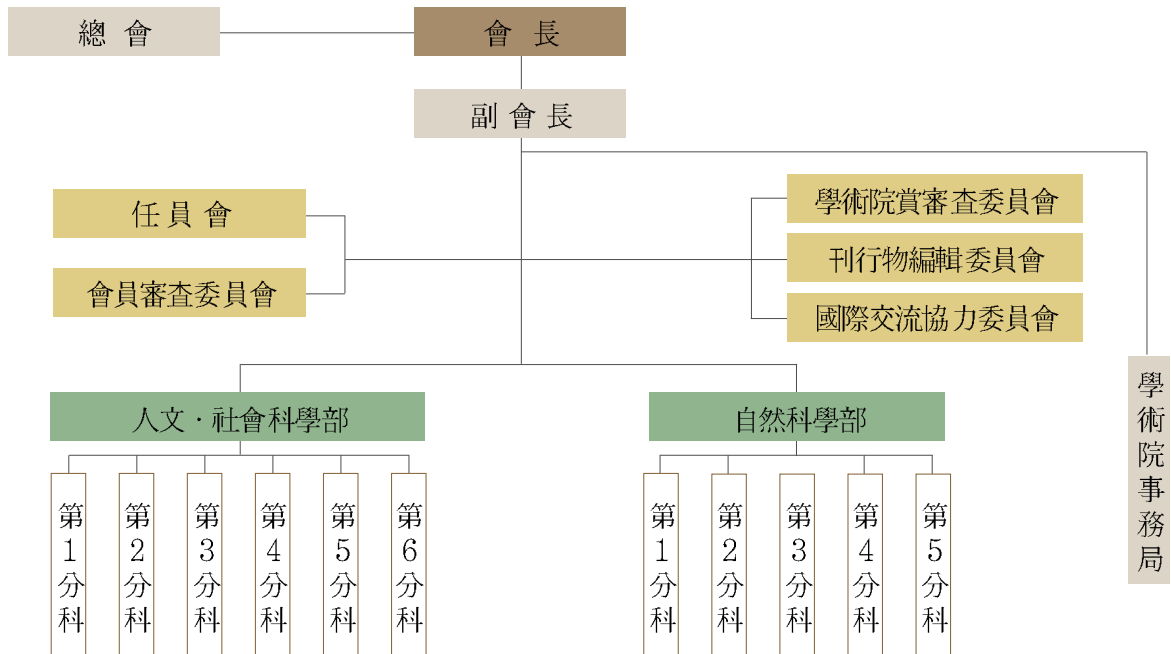
- 國家의 學術振興에 관한 政策 諮問 및 建議
- 學術研究와 그 支援
- 國內·外 學術交流 및 學術行事 開催
- 學術院賞 授與
- 基礎學問分野 優秀學術圖書 選定·補給
- 기타 學術振興에 관한 事項

3. 主要沿革

- 1952. 8. 7 文化保護法 制定 公布로 學術院 設立根據 마련 (法律 第248號, 會員定員 80人)
- 1954. 7. 17 學術院 開院(尹日善 博士 初代會長 就任)
- 1960. 2. 3 文化保護法 改正(會員定員 80人 → 100人)
- 1986. 4. 16 財團法人 學術院研究財團 設立
- 1987. 8. 20 第16次 太平洋科學大會(PSA) 開催
- 1987.10. 15 廳舍 新築 移轉(景福宮 → 瑞草區 盤浦4洞 山 94-4)
- 1988.12. 31 大韓民國學術院法 制定 公布 (法律 第405號, 會員定員 100人 → 150人)
- 2002. 4. 20 基礎學問育成 優秀圖書 選定支援事業
- 2002.12. 5 大韓民國學術院法 改正(名譽會員 制度 導入)
- 2004. 5. 13 第4次 아시아 學術會議(SCA) 總會 및 國際學術 심포지엄 開催
- 2009. 2. 6 學術院 會員 靑瓦臺 午餐
- 2010. 1. 13 國際學術機構 프로젝트 研究事業遂行
- 2011. 9. 28 第6回 韓·日 學術포럼 開催
- 2011. 6. 7 大韓民國學術院法 改正(4年 連任 → 平生會員)
- 2012. 8. 26 朴煥植 博士 第34代 會長 就任

Ⅱ. 組 織

1. 機構表



[分科別 專攻分野 및 定數]

(2012. 8. 31 現在)

部 別	分科別	專 攻 分 野	會 員		名譽會員
			定員	現員	
人 文 · 社 會 科 學 部	第1分科	哲學, 倫理學, 論理學, 美學, 宗教學, 教育學, 心理學	13	13	
	第2分科	語文學	13	12	
	第3分科	史學, 考古學, 民俗學, 人文地理學, 文化人類學	13	13	1
	第4分科	法學	12	12	2
	第5分科	政治學, 行政學, 社會學	12	12	
	第6分科	經濟學, 經營學	12	11	
		小 計	75	73	3
自 然 科 學 部	第1分科	數學, 物理學, 化學, 天文學, 氣象學	15	15	4
	第2分科	生物學, 地質學, 體育學, 營養學, 家政學	15	15	
	第3分科	建築工學, 金屬工學, 機械工學, 纖維工學 資源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造船工學, 土木工學, 航空工學	15	14	1
	第4分科	醫學, 齒科醫學, 獸醫學, 藥學	15	14	2
	第5分科	農學, 林學, 畜產學, 水產學	15	14	
			小 計	75	72
		合 計	150	145	10

2. 機 能

■ 總 會

總會는 會員 모두가 參與하는 最高議決機構로서 會員·名譽會員의 選出承認, 學術院賞 受賞者 認准, 學術院 會長·副會長 選出, 諸規程의 制·改正 등 學術院 運營에 必要한 主要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가 있으며, 定期總會는 每年 7월에 開催하고, 그 밖에 特別히 處理하여야 할 事項이 있을 경우에는 臨時總會를 開催한다.

■ 部 會

部會는 人文·社會科學部會와 自然科學部會가 있으며, 部會에서는 會員·名譽會員 候補者 選出과 部門別 學術院賞 受賞者 選出, 部會長 互選 등을 한다.

■ 任 員 會

任員會는 會長, 副會長, 各 部會長 4인의 會長團과 11인의 分科會長으로 構成되며,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과 總會에 附議하여야 할 事項, 그 밖의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을 審議 또는 議決한다. 會長과 副會長은 總會에서 選出되고 任期는 2年(1回 連任 可能)이며, 部會長은 部會에서 選出되고 任期는 1年이고, 分科會長은 分科會에서 互選하며 任期는 1年이다.

■ 分 科 會

學術院의 會員은 專攻에 따라 어느 한 分科會에 所屬되어 活動하게 되며 人文·社會科學部에 6個分科, 自然科學部에 5個分科, 總 11個 分科가 設置되어 있다. 分科會는 1년에 6回 開催되며 會員·名譽會員 候補者 資格 審査, 學術院賞 豫備審査, 會員의 學術研究 發表와 討論 등을 한다.

■ 學術院賞審査委員會

學術院賞 受賞者를 選定하기 위한 審査는 分科會 豫備審査, 部門別審査委員會의 部門別 審査, 綜合 審査委員會의 綜合 審査 등 3段階 審査가 있으며, 部門別 審査委員會는 5名 以上 13名 以下の 委員으로 構成하며 綜合 審査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人文·社會科學部會長, 自然科學部會長과 11 人の 分科會長으로 構成한다.

■ 國際交流協力委員會

學術院이 加入한 國際學術機構에 관한 業務를 處理하고, 學術에 관한 國際協力業務와 國際的인 學術賞에 관한 情報 및 資料 蒐集 등 學術院 國際交流活動 全般에 관한 事項을 審議·決定하는 機能을 遂行한다. 委員會는 副會長, 部會長 등 3人的 當然職 委員과 各 分科에서 委囑된 11人的 委員으로 한다.

■ 刊行物編輯委員會

會長, 副會長, 人文·社會科學部會長, 自然科學部會長과 각 分科에서 選定된 委員 11人으로 構成·運營되며, 學術院이 發刊하는 刊行物の 發刊基本計劃의 樹立, 執筆者 委囑, 原稿審查, 기타 編輯에 관한 事項 등을 審査·決定한다.

3. 會員選出 및 禮遇

■ 會 員

- 選出: 會員은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高等教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이와 동등 以上の 學校를 卒業하고 學術研究 經歷이 20年 以上인 者 또는 學術研究 經歷이 30年 以上인 者로서 學術發展에 顯著的 功績이 있는 者 중에서 學術院 會員 또는 學術院이 指定하는 該當分野 學術團體의 推薦을 받아 會員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該當 部會에서 會員候補者를 決定하고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出되며, 任期는 平生동안으로 한다.
- 禮遇: 國家는 會員을 優待하고 그 學識과 經驗을 活用할 수 있도록 學術研究 活動費, 會議 參席手當, 每月 定額의 手當 등을 支給한다.

■ 名譽會員

- 選出: 名譽會員은 學術研究 實績이 卓越하여 國際的으로 認定이 되고 우리나라의 學術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外國人 중에서 學術院會員 또는 學術院이 指定하는 學術團體의 推薦을 받아 分科會 및 名譽會員審査委員會 審査를 거쳐 該當 部會에서 議決하고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任되며 任期는 4年이고 連任할 수 있다.
- 禮遇: 名譽會員이 會議 또는 行事に 參席하거나 研究業績 등을 遂行하는 경우에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旅費 등을 支給한다.

4. 學術院事務局

學術院의 事務를 支援하기 위하여 教育科學技術部 所屬으로 學術院事務局을 두며, 事務局에는 事務局長(高位公務員團), 總務課와 學術振興課를 두고 있으며 公務員 定員은 17人이다.

Ⅲ. 主要活動

1. 大韓民國學術院賞

學術院에서는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論文 또는 著書가 優秀하여 學術發展에 顯著한 功勞가 있거나 크게 寄與할 것으로 認定한 사람에게 大韓民國學術院賞을 授與함으로써 學問의 發展에 寄與하고 있다. 學術院賞은 人文學·社會科學, 自然科學基礎, 自然科學應用으로 하며 總 6人 以內의 受賞者를 選定·施賞한다.

受賞者에게는 賞狀·메달과 賞金 5천만원을 授與하며, 1955년부터 2011년까지 212人을 施賞하였고 第57回 大韓民國學術院賞 施賞式은 2012年 9月 17日에 開催할 計劃이다.



2. 國際學術大會

國內·外 著名한 學者들을 招請하여 새롭게 擡頭되는 學術課題를 討論하고 未來社會의 學術發展에 寄與하고자 每年 10月 중에 國際學術大會를 開催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生存을 위한 氣候科學의 未來' 라는 主題로 10月 19日에 開催할 計劃이다.



3. 韓·日 學術포럼

大韓民國學術院과 日本學士院 間의 相互理解關係를 增進시키고 學術交流活動을 통해 學問의 發展에 寄與하고자, 2006년부터 韓·日 學術포럼을 開催하였다. 2011년에는 서울大學校 湖巖教授會館에서 '世界史와 生命科學' 이라는 主題로 開催되었고, 2012년에는 日本學士館에서 '經濟學 및 地質學' 이라는 主題로 談論의 場이 마련될 것이다.



4. 學術세미나 및 政策討論會

學術院 會員들의 오랜 研究經綸과 뛰어난 學識을 살려 우리나라의 學術發展과 政府의 政策決定에 寄與하고자 每年 學術세미나와 政策討論會를 開催하고 있다. 學術세미나는 每年 5월에 열리고, 分科세미나는 隨時로 開催하며, 政策討論會는 11월에 開催한다.



5. 學術研究

學術院 會員들의 持續的인 學術研究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每年 研究者를 選定, 學術研究費를 支援하고 있다. 學術研究는 分科別로 研究가 遂行되며, 研究結果는 分科세미나· 學術세미나· 政策討論會 등에서 發表하고, 學術院論文集에 掲載하여 國內·外 學術機關에 配布하고, 政策課題는 關聯部處에 建議하여 政策樹立에 反映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國際學術機構 프로젝트 研究事業을 통해 會員들의 國際學術機構 參與活動을 積極 支援하고 있다.

6. 學術交流

■ 外國學術院과 交流

學術院은 우리나라 學術機關을 代表하여 現在 14個 外國 學術院과의 學術交流 協定을 締結하여 相互交換訪問, 學術資料 交換 등 學術交流 活動을 活潑히 하고 있으며, 2012年 上半期 괴팅겐 學術院과 學術交流協定을 締結하였다.

年度	協定締結學術院
1990	이스라엘學術院(The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1992	프랑스과학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Institut de France)
1993	中國科學院(Chinese Academy of Sciences), 中國社會科學院(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美國學術院(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英國王室學會(The Royal Society)
1995	英國學術院(The British Academy)
1996	노르웨이學術院(The Norwegian Academy of Sciences and Letters)
1997	스웨덴왕립人文科學院(The Royal Swedish Academy of Letters, History and Antiquities), 몽골 學術院(The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1998	스웨덴왕립學術院(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日本學士院(The Japan Academy)
2010	크로아티아학술원(Croatian Academy of Sciences and Arts)
2012	괴팅겐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 國際學術機構 加入

學術院은 國際學術機構에 加入하여, 代表者를 派遣하고 學術大會에 參席하는 등 活潑한 國際交流活動을 遂行하고 있다. 加入한 國際學術機構數는 總 10個이며 太平洋科學協會(PSA), 國際科學聯盟理事會(ICSU), 國際科學財團(IFS), 國際學術院聯合(UAI), 아시아學術團體聯合(AASSA), 國際地球圈·生物圈研究計劃(IGBP), 아시아學術會議(SCA), 國際學術院委員會(IAP), 國際學術院醫學委員會(IAMP), 國際社會科學理事會(ISSC)이다.



7. 學術資料發刊

學術院은 每年 學術에 관한 資料를 發刊하여 國內·外 學術機關에 配布하며, 學術資料 發刊은 學術院刊行物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發刊한다.

- 學術院論文集
- 學問研究의 動向과 爭点
- 國際學術大會論文集
- 大韓民國學術院會報
- 大韓民國學術院 便覽
- 國際學術交流 實績報告書



8. 基礎學問育成 優秀學術圖書 選定·補給

學術院은 2002년부터 教育科學技術部에서 基礎學問育成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優秀學術圖書選定·支援事業을 委任받아 遂行하고 있다. 優秀學術圖書 選定對象은 人文學, 社會科學, 韓國學, 自然科學 分野의 學術圖書로서 公正한 審査를 거쳐 每年 300餘種의 優秀學術圖書를 選定·購入하여 大學, 研究所 등에 補給한다. 2012년에는 299種의 優秀學術圖書를 選定하였다.



9. 學術院研究財團

學術院 會員들의 學術研究 및 學術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1986년에 公益法人으로 設立하였다. 財團의 基金은 會員·企業 등으로부터 出捐받고 있으며 理事長은 學術院 會長이, 理事는 學術院 歷代 會長, 社會 著名人士 등이 맡고 있다.

IV. 會員現況

1. 任員

會	長	：	朴	煥	植	(分	析	哲	學)						
副	會	長	：	權	肅	一	(物	理	學)						
人	文	·	社	會	科	學	部	會	長	：	金	鍾	源	(刑	法)
自	然	科	學	部	會	長	：	金	洙	鎮	(鑛	物	學)		

第	1	分	科	會	長	：	李	敦	熙	(教	育	哲	學)		
第	2	分	科	會	長	：	洪	在	星	(佛	語	學)			
第	3	分	科	會	長	：	李	成	茂	(國	史	學)			
第	4	分	科	會	長	：	金	南	辰	(行	政	法)			
第	5	分	科	會	長	：	李	正	馥	(現	代	韓	國	政	治)
第	6	分	科	會	長	：	柳	莊	熙	(經	濟	學)			

第	1	分	科	會	長	：	金	容	海	(有	機	化	學)			
第	2	分	科	會	長	：	李	貞	玕	(家	族	資	源	學)		
第	3	分	科	會	長	：	韓	松	曄	(電	氣	工	學)			
第	4	分	科	會	長	：	李	純	炯	(醫	學	-	寄	生	蟲	學)
第	5	分	科	會	長	：	柳	順	昊	(土	壤	學)				



2. 會員

人文・社會科學部

[第1分科 哲學, 倫理學, 論理學, 美學, 宗教學, 教育學, 心理學]



金奎榮
(西洋哲學)



鄭範謨
(教育學)



曹大京
(心理學)



朴煥植
(分析哲學)



鄭鎮弘
(宗教學)



車載浩
(心理學)



趙明翰
(心理學)



吳炳南
(美學)



李敦熙
(教育哲學)



李星珍
(教育心理學)



吉熙星
(佛教哲學)



蘇光熙
(西洋哲學)



尹絲淳
(東洋哲學)

[第2分科 語文學]



呂石基
(英文學)



鄭明煥
(佛文學)



姜斗植
(獨逸文學)



李基文
(國語學)



金完鎭
(國語學)



張奭鎭
(言語學)



金顯瑒
(스페인文學)



金容稷
(韓國現代文學)



李京植
(英文學)



趙東一
(韓國古典文學)



洪在星
(佛語學)



金學主
(中國文學)

[第3分科 史學, 考古學, 民俗學, 人文地理學, 文化人類學]



全海宗
(東洋史)



李杜鉉
(民俗學, 文化人類學)



李佑成
(韓國史)



金容燮
(韓國史)



車河淳
(歷史學)



李成茂
(國史學)



李琦錫
(人文地理學)



李基東
(韓國史)



金榮漢
(西洋史)



李成珪
(東洋史)



李泰鎭
(韓國政治社會史)



崔秉鉉
(考古學)



韓相福
(文化人類學)

[第4分科 法學]



南興祐
(刑法學)



金鍾源
(刑法)



金正均
(國際法, 法哲學)



金哲洙
(憲法)



黃迪仁
(經濟法, 民法)



高翔龍
(民法)



金南辰
(行政法)



鄭東潤
(商法)



朴秉濠
(韓國法制史, 家族法)



金相容
(民法)



沈憲燮
(法哲學)



金孝全
(憲法)

人文・社會科學部

[第5分科 政治學, 行政學, 社會學]



洪承稷
(社會學)



車基璧
(比較政治學)



林熺燮
(社會學)



姜信澤
(行政學)



安秉俊
(國際政治學)



金璟東
(社會學)



金容九
(國際政治學)



陳德奎
(政治學)



白完基
(韓國行政 吳 行政文化)



李正馥
(現代韓國政治)



金弘宇
(政治思想)



慎鏞廈
(社會學)

[第6分科 經濟學, 經營學]



李賢宰
(經濟學)



趙淳
(經濟學)



邊衡尹
(經濟學)



金東基
(經營學)



朴光淳
(經濟學)



尹起重
(經濟學)



郭秀一
(經營學)



鄭基俊
(經濟學)



金基永
(經營學)



柳莊熙
(經濟學)



李鶴容
(經濟學)

自然科學部

[第1分科 數學, 物理學, 化學, 氣象學]



張世憲
(化學)



沈貞燮
(化學)



尹世元
(物理學)



朴泰源
(應用化學)



尹甲炳
(數學)



安世熙
(核物理學)



盧在植
(大氣科學)



高允錫
(核物理學)



朴世熙
(數學)



權肅一
(物理學)



奇宇恒
(數學)



李益春
(物理化學)



金容海
(有機化學)



李穩
(有機化學)



趙成浩
(物理學)

[第2分科 生物學, 地質學, 體育學, 營養學, 家政學]



鄭昌熙
(地質學)



金昌煥
(昆蟲學, 發生物學)



朱軫淳
(營養學)



李商萬
(岩石學)



金熏洙
(動物分類學)



李永祿
(分子生物學)



金洙鎭
(鑛物學)



金俊鎬
(生物學)



李貞珩
(家政學)



河斗鳳
(生物學)



朴相大
(細胞分子遺傳學)



孟元在
(營養學)



林繁藏
(體育學)



張浩完
(地球化學)



金相九
(植物分子遺傳學)

自然科學部

[第3分科 建築工學, 金屬工學, 機械工學, 纖維工學, 資源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造船工學, 土木工程, 航空工學]



康明順
(機械工學)



尹張燮
(建築學)



李承院
(電氣工學)



金商周
(金屬材料工學)



朴仲鉉
(土木工程)



李晚榮
(電子工學)



趙宜豪
(機械工學)



金相溶
(纖維工學)



盧五鉉
(航空工學)



李忠雄
(電子工學)



尹德龍
(金屬材料工學)



玄炳九
(資源工學)



羅正雄
(電子工學)



韓松曄
(電氣工學)

[第4分科 醫學, 齒科醫學, 獸醫學, 藥學]



李鎬汪
(微生物學)



權彞赫
(預防醫學)



李相燮
(藥學)



李長洛
(獸醫藥理學)



文國鎮
(法醫學)



金周煥
(齒醫學)



金勇一
(病理學)



金洛斗
(藥物學)



金炳洙
(腫瘍學)



李純炯
(寄生蟲學)



金榮中
(生藥學)



金丁龍
(內科學)



高在丞
(齒醫學)



申喜燮
(遺傳學, 神經科學)

[第5分科 農學, 林學, 畜產, 水產學]



沈鍾變
(林學)



李春寧
(農化學)



趙載英
(食用作物學)



吳鳳國
(畜產學)



金文澐
(蠶絲學)



崔炳熙
(絹絲工學)



洪性珏
(樹木生理學)



田世圭
(魚病學)



李炳駙
(園藝學)



金顯旭
(畜產加工學)



黃炳國
(植物病理學)



柳順昊
(土壤物理學)



張東錫
(水產食品衛生學)



李弘秬
(作物學)

3. 名譽會員



John R.
Schrieffer
(Physics)
U.S.A.



Ryoji Noyori
(Organometallic
Chemistry)
Japan



Saburo Nagakura
(Dynamics, Electronic
Structure)
Japan



Jan Lindsten
(Human
Cytogenetics)
Sweden



Jugen Kocka
(History of Modern Germany
and Europe, Social History,
Comparative)Germany



Achenbach, Jan Drewes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U.S.A.



Hoshino Eichi
(Civil Law)
Japan



Christian Starck
(Constitutional
Law)



Fujita Yoshio
(Astronomy)
Japan



Sugimura Takashi
(Biochemistry ·
Oncology)
Japan

4. 會長團



朴煥植
(會長)



權肅一
(副會長)



金鍾源
(人文·社會科學部 會長)



金洙鎭
(自然科學部 會長)

5. 歷代會長



尹日善
(1~6代, 1954~1960)



李丙燾
(7~17代, 1961~1980)



申泰煥
(18代, 1981~1982)



沈鍾燮
(19~21代, 1983~1987)



徐燉珏
(22~23代, 1988~1991)



權彝赫
(24~25代, 1992~1995)



李賢宰
(26~27代, 1996~1999)



李鎬汪
(28~29代, 2000~2004)



金泰吉
(30~31代, 2005~2008)



金商周
(32~33代, 2008~2012)

學術院事務局



V. 大韓民國學術院法

[시행 2011.6.7] [법률 제10773호, 2011.6.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 ③학술원에 인문·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 ④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 ②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③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선출) ①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②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 ②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①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회장·부회장의 선출 등) ①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 ②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①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과회장) ①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명예회원) ①외국과의 학술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학술기구와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7조(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국) ①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0773호, 2011.6.7]

-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